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6월 24일 류재구 의원 발의(9명 의원 찬성)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및 의결(2009.7.7.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류재구 의원)

가. 제정이유

-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·정책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,
-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 (안 제3조)
-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설치 함. (안 제6조)
-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 함. (안 제7조)
 -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, 연구의 주제 조정 및 연구계획의 승인·결정, 연구활동비지원 등 심의.
- 민간 심사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(안 제9조)
-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. (안 제11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소요 및 확보 방안은?</p> <p>○ 동 조례의 목적을 기존 시행되고 있는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의거 분야별 의정자문위원을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, 중복성에 대하여는?</p> <p>○ 동 조례 시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중첩되어 의원연구단체와 각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?</p> <p>○ 서로 소통하는 의원끼리의 모임 또는 당 대 당의 모임으로 되어 의회 내부 분란의 소지는 없는지?</p>	<p>○ 의정활동추진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</p> <p>○ 동 조례는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스스로가 입법정책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의정자문위원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중복성도 있을 수 있음.</p> <p>○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.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실행하는 것임.</p> <p>○ 본인 판단에는 많아야 2, 3개 단체, 적으면 1개 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며, 실제 시행시기는 세부적 시행규칙 마련, 연구단체구성 및 연구기간 등을 감안하면 5대 의회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, 의원 스스로의 역량을 함양 시킨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·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 조례는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

나. 반대토론

- 동 조례 시행시 소요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사전 절차가 없이 막연히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,
- 조례 입안등 입법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현행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도 가능하다는 중복성이 있으므로 부결 또는 보류함이 타당함.

5. 심사결과 : 『수정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439호
의결년월일	2009. 7. 10. (제153회)

제안년월일 : 2009. 7. 7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 제6조에 의하면,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의원 3명과 외부인사 3명을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,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10조 에서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동 심사위원회의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의원 중심의 연구단체의 활동사항 등 제반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의 직무를 사무국 직원이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,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하며,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함.(안 제6조 3항 내지 4항)
-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임기를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에 따라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함. (안 제6조 6항)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②~⑥항 및 제10조 내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② 부위원장을 간사로 7인을 8명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,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을 갖춘 외부인사 3명을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에 따라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안 제10조를 삭제하고, 제11조를 제10조로, 제12조를 제11조로, 제13조를 제12조로,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같음.』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6조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) ① (생 략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회는 의원 3인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인으로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, 의회운영 전문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 <p>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,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(간사)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width: 10%;">제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width: 10%; text-align: right;">조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>-----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제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right;">조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>-----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제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right;">조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>-----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제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4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right;">조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>-----</td> </tr> </table>	제	1	1	조	-----				제	1	2	조	-----				제	1	3	조	-----				제	1	4	조	-----				<p>제6조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간사 각 1명을 -----8명의 위원으로 -----.</p> <p>③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,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으로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⑤ (원안과 같음)</p> <p>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, 전문성에 따라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 한다.</p> <p>〈삭 제〉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width: 10%;">제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0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width: 10%; text-align: right;">조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>-----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제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right;">조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>-----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제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right;">조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>-----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">제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 style="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text-align: right;">조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>-----</td> </tr> </table>	제	1	0	조	-----				제	1	1	조	-----				제	1	2	조	-----				제	1	3	조	-----			
제	1	1	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	1	2	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	1	3	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	1	4	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	1	0	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	1	1	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	1	2	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	1	3	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의원연구단체”라 한다)라 함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·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의원연구단체의 구성) ①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의 부천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, 의원연구단체 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(이하 “의원연구단체 대표자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.

제4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등록취소)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제6조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) ①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

록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,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으로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, 전문성에 따라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
4.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위원회 회의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수당)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공동참여)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) ①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체 등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②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③의장은 제2항의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활동 중간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의원연구단체는 연 1회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11월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3개월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생략하며 연구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“의원연구단체”라 한다)라 함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·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의원연구단체의 구성)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부천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, 의원연구단체 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(이하 “의원연구단체 대표자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.

제4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등록취소)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제6조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)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,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으로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, 전문성에 따라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체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
4.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수당)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공동참여)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)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의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활동 중간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 1회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11월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3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생략하며 연구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□ 제정이유

-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·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,
-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함(제3조)
- 나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함.(제6조)
- 다.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.(제7조)
- 라. 민간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(제9조)
- 마.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.(제11조)